#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36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최은석·서일준·이인선

정희용 • 이달희 • 송언석

정연욱 • 박정하 • 박덕흠

김태호 • 박충권 • 김종양

이성권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 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됨.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보험금청구권자가 바로 알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며,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자가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 등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보험금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며,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보험자의 회신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않도록 하여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1조, 제662조 및 제731조제3항).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1조 본문 중 "3년내에"를 "5년내에"로 한다.

제6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을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안 날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5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보험자의 통지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7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당사자 사이에 철회 가능여부에 관한 다른 약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피보험자는 장래를 향하여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서면동의의 철회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제651조 및 제7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 ②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청구권이 이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51條(告知義務違反으로 因む	第651條(告知義務違反으로 因む
契約解止) 保險契約當時에 保	契約解止)
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	
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重要한 事項을 告知하지 아니	
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	
는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날	
로부터 1月內에, 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u>3年內에</u> 限하여 契約	<u>5</u> 年內에
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保	
險者가 契約當時에 그 事實을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因하	
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u>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제662조(소멸시효) <u>①</u>
은 <u>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u>	<u>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청</u>
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구권이 발생했음을 안 날 또는
<u>청구권은 2년간</u> 행사하지 아니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있었던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
	<u>년간</u>
<u>&lt;신 설&gt;</u>	②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신 설>

第731條(他人의 生命의 保險) ① 第731條(他人의 生命의 保險) ① · ② (생 략)

<신 설>

청구권은 5년간, 보험료청구권 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 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한 경우에 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는 보험자의 통지가 보험 금을 청구한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 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철회 가능여부 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한다)에는 피보험자 는 장래를 향하여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서면동의의 철 회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